

인천지방법원 2020. 2. 18 선고 2019나571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전 문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개명 전 : F)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진

담당변호사 주경진

피고, 피항소인 G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두

변론 종결 2019. 12. 17.

판결 선고 2020. 2. 18.

제 1 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3. 20. 선고 2017가단15968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1978. 1. 12. 접수 제2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1991. 11. 7. 접수 제289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중 각 145분의 1 지분에 대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I는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1961. 4. 18. 사망하였다(이하 I를 '망인'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78. 1. 12. 망인의 상속인들인 H, J, K, L, 피고, M, N, O, P, Q, R(이하 '망인의 상속인들'이라 한다)에게 상속지분의 비율로 1961.4. 18.자1)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망인의 상속인들의 지분에 관하여 각 1978. 1. 12. 피고에게 1977. 12. 22.자 공유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1차 이전등기'라 한다)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망인의 상속인들의 지분에 관하여 각 1991. 11. 7. 피고에게 1991.10.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2차 이전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라. 원고들은 H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피고를 제외한 망인의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1차 및 2차 이전등기를 각 마쳤으므로, 이 사건 1차 및 2차 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만큼 이 사건 1차 및 2차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명의자가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수 없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22440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1차 및 2차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피고는 그 전의 소유자인 피고를 제외한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력은 피고가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H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1차 및 2차 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은 여전히 원고들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에 관한 증명을 위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1차 및

2차 이전등기가 피고가 H의 의사에 반하여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위조하여 임의로 마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든 증거, 제1심 증인 S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 등 피고를 제외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1차 및 2차 이전등기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된 일 처리를 위하여 도장 등을 교부하면서 피고가 장손으로서 망인의 재산을 받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거나 적어도 묵인하였던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차 및 2차 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및 2차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민소영, 판사 서인덕, 판사 이재환

[별지1.목록]

부동산의 표시

1. [토지] 경기도 김포시
대 1084㎡
2. [토지] 경기도 김포시
전 918㎡
3. [토지] 경기도 김포시
답 3896㎡

[별지2.목록]

부동산의 표시

1. [토지] 경기도 김포시
대 376㎡

2. [토지] 경기도 김포시
전 230㎡

201

1) 별지 제1목록 제1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된 '1981. 4. 18. 재산상속'은 '1961. 4. 18. 재산상속'의 오키로 보인다.